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명(5등급·6등급)”을 “7명(7등급 1명, 5등급·6등급)”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5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8등급 외무공무원 66 다음에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을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을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5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8등급 외무공무원 66 다음에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을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7등급 외

부 칙

- 3 -

– 4 –

현행	개정안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 ----- ----- -----

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③ (생략)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등급·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기후변화대사, 감사관, 외교전략기획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1명을 말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

스엔 켈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을 말한다.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스엔 켈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7명(7등급 1명, 5등급·6등급 -----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스엔 켈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을 말한다.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스엔 켈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를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국제법규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유럽경제외교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정원대비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 <신 설>	· 1	+1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5	+5
·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5	<삭 제>	-5
· ·	· ·	· ·	
·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1	+1
·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1	<삭 제>	-1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u>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u>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u>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u> <u>서기관·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	·	·	
·	·	·	
<u>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u>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u> <u>서기관·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